

계약의 해제 요건에 관한 사항

- 가. 입소자(또는 보호자)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- 나. 입소자 수칙이나 계약사항 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.
- 다.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.
- 1)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.
 - 2)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.
 - 3)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
(단,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않는 경우)
- 라.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 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.

복지타운마리아노인요양원